

의안번호	2216657
의 퇴 인	조인철의원
회 답 일	2026. 3. 11.
추계번호	26B0702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24억 2,000만원(연평균 4억 8,4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 중 비용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 수립 (안 제9조)	500	—	—	—	—	500	100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 설치·운영 (안 제10조)	384	384	384	384	384	1,920	384
계	884	384	384	384	384	2,420	484

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투자 혁신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금액,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의 민간위원 수, 회의개최 횟수 및 부대경비 소요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는 지역과학기술혁신에 필요한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및 초광역권의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 및 그 성과의 확산을 지원하는 등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재정 지원 및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함(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재정 지원 및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2	안 제6조(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및 조정)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의 특성 있는 혁신과 발전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이하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제1항) 시·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10조에 따른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3	안 제7조(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추진 등)	시·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음(제1항) 1. 「지방자치법」에 따른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운용 2.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3.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유예 정부는 시·도지사가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조사·연구,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8조(지역과학기술 투자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시·도지사는 재정 여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예산의 일정 비율을 지역과학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목표치로 설정하여 공표할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부는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투자 목표를 달성한 시·도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6항)	
5	안 제9조(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및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연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5년 단위의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이하 “지역중장기투자혁신전략”이라 한다)을 세우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함. 지역중장기투자혁신전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음(제1항)	의무규정
6	안 제10조(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	시·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를 둬. 다만, 관할 시·도 혹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유사한 자문기구가 있는 경우 해당 기구를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로 볼 수 있음(제1항)	의무규정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3항)	재량규정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둘 수 있음(제5항)	
7	안 제11조(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	시·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정책·사업의 기획 및 관리, 조사·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지역공공연구기관 중에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담기관의 설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음(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제4항)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8	안 제12조(지역과학기술 정책연구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과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비롯한 지역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마련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와 각종 데이터의 분석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책·사업 컨설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과학기술 정책연구센터(이하 “정책연구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책연구센터가 조사·연구, 데이터의 분석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제2항)	
9	안 제13조(지역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과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지역과학기술 정책과의 부합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의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등에 있어서 지역연구개발사업에 특화된 평가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평가를 수행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이하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를 우선 지원할 수 있음(제4항)	
10	안 제14조(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시·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역의 연구역량 강화와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 추진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4항)	
11	안 제15조(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지식·정보의 공유, 기술협력 및 융합 등을 위하여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이하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2	안 제16조(지역공공연구기관의 육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공공연구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13	안 제17조(지역거점연구기관의 지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해당 시·도에 소재하는 지역공공연구기관 중에서 지역거점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거점연구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14	안 제18조(지역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 지역 대학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15	안 제19조(지역 내 산·학·연 협력의 촉진 등)	시·도지사는 관할 시·도 내 산·학·연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과학기술혁신 성과가 지역 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1항) 1. 협동·융합연구 및 기술개발 2. 인력, 정보 등의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3. 연구 시설·장비 등의 공동 활용 및 서비스 지원 4. 기술이전, 연구성과의 검증, 산·학·연 협력 기술사업화 및 창업의 지원 5.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및 재교육 6. 그 밖에 산·학·연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산·학·연 간의 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시·도지사는 지역공공연구기관과 지역 대학의 연구역량이 지역 기업의 기술문제 해결과 기술 역량 강화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제3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학·연 간의 협력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존에 추진 중인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 과학기술 인력양성, 연구 시설·장비의 구축·활용 등의 사업을 연계하거나 통합하여 지원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의무규정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6	안 제20조(지역과학기술인 양성 및 활용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력 있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지역과학기술인을 양성·개발하고, 지역과학기술인이 지역에 정착하여 지속적,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전주기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함(제1항) 1. 지역과학기술인의 중·장기적 수요 및 공급 전망의 수립 2. 지역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공급계획 수립 3. 지역과학기술인에 대한 교육훈련, 재교육의 촉진 4. 지역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한 교육의 질적 강화 방안 수립 5. 지역과학기술인을 위한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연구기반 구축 및 연구활동 지원 6. 지역과학기술인의 지역 내 취업·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7.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의 지역 유치 및 정착을 위한 지원 8. 그 밖에 지역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의무규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 및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한 지역과학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역공공연구기관과 지역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연수, 학생 및 교원의 교류 등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지역 인재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 지역공공연구기관과 지역 소재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4항)	
17	안 제21조(지역과학기술인 정주여건의 개선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과학기술인이 지역으로 정착하여 지역과학기술혁신 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과학기술인을 위한 주거·교육·문화생활에 필요한 정주여건을 마련하여야 함(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과학기술인의 정주여건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함(제2항) 1. 「고용보험법」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의 지원 2. 「근로복지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근로자주택공급제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주택구입자금등의 융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3.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4조제2호에 따른 공동숙박시설의 지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의 주택 입주 지원 5. 그 밖에 지역과학기술인의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8	안 제22조(과학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	시·도지사는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도가 직면한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함(제2항)	
		정부는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19	안 제24조(지역과학기술정보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 등)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 체계를 운영하는 경우, 지역별 지표를 두어 관리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20	안 제2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문 능력과 인력을 갖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6조(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및 조정)	—	•현행 사업 존재 — 제정안 시행으로 사업 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사업 확대 여부 및 확대 규모를 알 수 없음
2	안 제11조(지역별 과학기술 전달기관)	—	
3	안 제12조(지역과학기술 정책 연구센터)	—	
4	안 제18조(지역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	
5	안 제19조(지역 내 산·학·연 협력의 촉진 등)	—	
6	안 제20조(지역과학기술인 양성 및 활용 촉진)	—	
7	안 제22조(과학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	—	
8	안 제24조(지역과학기술정보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 등)	—	
9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를 규정한 선언적 조항
10	안 제7조(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추진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현 시점에서는 시·도별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정부 지원의 범위 및 대상 등을 특정하기 곤란함
11	안 제8조(지역과학기술 투자 확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고, 정부가 연구개발 투자 목표를 달성한 시·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내용 및 규모, 연구개발 투자 목표를 달성한 시·도의 수 등을 예측하기 곤란함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2	안 제13조(지역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연구개발사업,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 추진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할 경우, 연구개발사업 기획·추진·관리 및 정부의 재정 지원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지역연구개발사업 등의 내용 및 규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규모 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추가 재정 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13	안 제14조(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4	안 제15조(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5	안 제16조(지역공공연구기관의 육성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공공연구기관 및 지역거점연구기관을 지원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부재하여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특정할 수 없음
16	안 제17조(지역거점연구기관의 지정 등)		
17	안 제21조(지역과학기술인 정주여건의 개선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과학기술인을 위한 주거·교육·문화생활에 필요한 정주여건 마련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함
18	안 제2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제정안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위탁기관에 위탁할 업무의 범위 및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위탁기관의 인력 및 경비 등의 규모를 알 수 없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9	안 제9조(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 수립)	○	•유사사례 참고 -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 정책 연구 용역
20	안 제10조(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	○	•유사사례 참고 -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운영 사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의 일부 조항은 현재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제정안에 따라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 상황에서 확대되는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제정안 조항별 실시 중인 사업과 예산현황은 다음과 같음

※ [참고자료] ‘제정안 관련 실시 중인 사업 현황’

[표 2] 제정안과 현행 사업 비교

조·항(조제목)	현행 사업(2026년)
안 제6조(지역과학기술 혁신계획의 수립 및 조정)	○ 17개 시·도 연구개발지원단 지원 예산: 53억원 - 17개 시·도 연구개발지원단을 통한 지역별 과학기술혁신전략 등 수립
안 제11조(지역별 과학 기술 전담기관)	○ 17개 시·도 연구개발지원단 지원 예산: 53억원 - 17개 시·도에 지역R&D사업의 성과 확산 및 지역 내 자생적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자체별 R&D 전담기구인 ‘연구개발지원단’ 설치·운영
안 제12조(지역과학기술 정책연구센터)	○ 지역혁신정책센터 지원 예산: 10억원 - 지역혁신정책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별 혁신수준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안 제18조(지역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 지역산업연계 대학 Open-Lab 육성지원: 65억원 - 대학의 기술사업화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출연연과의 협업을 통해 공동연구실(Open-Lab)을 구성·운영 ○ 집단연구지원: 4,706억원 - 국내 대학의 우수 연구인력을 학문분야별 특성에 맞게 조직화, 집중 지원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집단으로 성장 견인

조·항(조제목)	현행 사업(2026년)
안 제19조(지역 내 산·학·연 협력의 촉진 등)	○ 지역연구개발 혁신지원: 890억원 – 지역산업 수요에 기반한 과기원·지역거점대 중심 산학연 연구단-지역혁신 기관이 협업하는 고난도·광역협업형 자율형 R&D 지원 ○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19억원 – 지역발전에 필요할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지역의 미래 먹거리 창출 및 지역 산·학·연 R&D 생태계 구축 ○ 산학연협력활성화지원: 569억원 – 대학·출연(연)의 우수 연구성과를 발굴하여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 및 기술 지주회사 등 우수 기술사업화 조직 육성 지원
안 제20조(지역과학기술 인 양성 및 활용 촉진)	○ 지역 이공계 대학생 기초 역량 강화 지원: 30억원 – 지역 대학 이공계열 학부 저학년의 기초 교과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선도모델(인프라) 육성 ○ 인재활용확산지원: 854억원 – 이공계 학부-대학원생, 박사후 연구원 등 인재 성장단계별 현장-산업 연계를 강화하고 해외인재, 고경력 과학기술인 등 다양한 과학기술인재의 활용 촉진
안 제22조(과학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	○ 지역연구개발 혁신지원: 890억원 – 지역산업 수요에 기반한 과기원·지역거점대 중심 산학연 연구단-지역혁신 기관이 협업하는 고난도·광역협업형 자율형 R&D 지원
안 제24조(지역과학기술정보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 등)	○ 17개 시·도 연구개발지원단 지원 예산: 53억원 – 17개 시·도에 지역R&D사업의 성과 확산 및 지역 내 자생적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자체별 R&D 전담기구인 ‘연구개발지원단’ 설치·운영 ○ 지역혁신정책센터 지원 예산: 10억원 – 지역혁신정책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별 혁신수준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지역연구개발 혁신지원: 890억원 – 지역기술혁신허브 육성지원: 지역산업과 연관된 국가전략기술분야에 대해 지자체 주도로 기존 지역사업 분석

□ 본 추계에서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조항을 제외하고 안 제9조의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 수립, 안 제10조의 지역과학기술 자문회의에 대한 비용을 추계함

-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 제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5년 단위의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을 세워야 하므로, 혁신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추계기간 중 첫 해에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 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를 두어야 하므로, 16개 시·도에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를 두고, 위원회당 민간위원을 20명 위촉하며, 민간위원에게 회의 참석수당으로 1인당 30만원씩 지급¹⁾ 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연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²⁾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 수립(안 제9조)

- 유사사례를 참고하면,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 수립을 위한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5억원으로 추계(연평균 1억원)
 -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 정책연구 용역(5억원) 참고

[표 3]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안 제9조)	500	—	—	—	—	500	100

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투자 혁신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20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100,000원내에서 집행(기획예산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6. 1. p.150.)
 2) 유사 위원회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회의 개최 사례 참고(2022년 연 3회, 2023년 연 4회, 2024년 연 5회)

□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 설치·운영(안 제10조)

- 제정안에 따라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를 설치·운영할 경우 필요한 추가재정 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19억 2,000만원으로 추계(연평균 3억 8,400만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2026.7.1. 시행예정)를 반영하여 16개 시·도에서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 16개 시·도 × 민간위원 20명 × 회의 참석수당 단가 30만원 × 회의 개최 횟수 연 4회 = 3억 8,400만원

[표 4]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 설치·운영(안 제10조)	384	384	384	384	384	1,920	384

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의 민간위원 수, 회의개최 횟수 및 부대경비 소요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추계가 곤란한 재정수반요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이므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투자 혁신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금액,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의 민간위원 수, 회의개최 횟수 및 부대경비 소요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

[참고자료] 제정안 관련 실시 중인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소관부처	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26)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 (자율, 제주, 세종)	○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 - (목적) 지역별 R&D 전담기구인 연구개발지원단의 R&D 조사·분석 및 정책지원을 통해 광역시·도 지자체의 R&D 역량 및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17개 시·도에 지역R&D사업의 성과 확산 및 지역 내 자생적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자체별 R&D 전담기구인 '연구개발지원단' 설치·운영 ○ 지역혁신정책센터 - (목적) 총괄·정책 자문 역할의 정책연구센터의 정책 지원을 통하여 지역의 자체적 R&D 역량 향상 및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지역혁신정책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별 혁신수준 진단을 통해 종합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5,262
	지역산업연계대학 Open-Lab 육성 지원	- (목적) 지역 대학의 기술 + 출연연의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 스케일업 지원으로 지역 혁신 중점 기술 적합성·완성도 향상 및 지역기업 활용도 제고 - (주요내용) 대학의 기술사업화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출연연과의 협업을 통해 공동연구실(Open-Lab)을 구성·운영하여 지역 주도의 학-연 협력 기술사업화 혁신모델 구축	6,520
	집단연구지원	- (목적) 국내 대학의 우수 연구인력을 학문분야별 특성에 맞게 조직화, 집중 지원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집단으로 성장 견인 - (주요내용) • (선도연구센터) 창의성과 탁월성을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우수 연구집단 발굴·육성 • (기초연구실) 융·복합 연구의 활성화에 기틀이 되는 소규모 연구그룹 집중 육성 • (국가연구소(NRL2.0)) 대학 강점 분야의 우수 연구인력, 인프라 등을 활용해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혁신적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소 육성	470,581
	지역연구개발 혁신지원	- (목적) 지역의 초격차 기술 발굴 및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4극3특별 과학기술 혁신지원을 통해 지역 자율 중심의 균형발전 실현 - (주요내용) • (지역기술혁신허브 육성지원) 지역산업과 연관된 국가전략기술분야에 대해 지자체 주도로 기존 지역사업을 분석하고 연구개발, 사업화 등 공백영역 지원 • (4극3특별 과학기술 혁신지원) 중부·호남·대경·동남권 및 강원·전북·제주 지역의 지역산업 수요에 기반한 지역자율R&D 사업단 중심 산학연 연구단-지역혁신기관이 협업하는 고난도·광역협업형 자율형 R&D 지원	89,016

소관부처	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26)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자율, 제주)	-(목적) 지역발전에 필요할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지역의 미래 먹거리 창출 및 지역 산·학·연 R&D 생태계 구축 -(주요내용) 지역발전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지자체별 과학기술 미래 프로젝트 선정 및 사업 지원	1,900
	인재 활용 확산지원	-(목적) 이공계 학부-대학원생, 박사후 연구원 등 인재 성장단계별 현장-산업 연계를 강화하고 해외인재, 고경력 과학기술인 등 다양한 과학기술인재의 활용 촉진 등 -(주요내용) • (프로젝트 석박사 양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고급 기술인재 양성 및 중소기업 공급, 석박사급 연구인력 유지, 공동연구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 등 • (시니어 과학기술인 경력이음 지원) 중소기업, 출연(연), 과기원 등에 고경력 퇴직 과학기술인 채용 지원 및 중소기업-단체의 공동연구 지원 • (계약정원제 활용) 기업 채용을 조건으로 계약정원제를 활용하여 전략기술 분야 기업맞춤형 석사급인력을 양성·공급 • (차세대공학자 양성사업) 산업체 수요 기반 연구과제 수행경험 및 산·학 멘토링을 이공계 학부생에게 제공 • (전략기술 박사후연구원 산학 프로젝트)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입될 우수인력의 확보, 박사급 고급인력의 안정적 연구기반 강화를 통한 산업계 진출을 지원 • (국내 글로벌 석학 연구역량 활용 지원) 석학급 연구자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실전문제 해결형 인재양성) 이공계 대학 학부생 중심 실전문제연구팀의 산업체 수요기반 연구과제 수행 및 교육과정 지원	85,419
	산학연협력 활성화지원	-(목적) 대학·출연(연)의 우수 연구성과를 발굴하여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 및 기술지주회사 등 우수 기술사업화 조직 육성 지원 등 -(주요내용) • (기술경영촉진)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 3개, 컴퍼니빌더 지원형 10개 등 기술사업화 조직 지원을 통해 우수 기술사업화 조직 육성 • (지역과학기술성과실용화지원) 6개 대학원(5개 권역) 지원을 통한 지역 특화 과학기술 실용화 전문인력(연 240명) 선발 및 육성 • (산학연협력기술창업법인육성) 5개 기술창업법인 대상 인큐베이팅 지원을 통해 사업화 고도화(매출 및 고용 창출 등) 추진 • (민간연계형공공연구성과확산지원) 기업수요를 바탕으로 R&D 성과확산을 위한 민간R&D 협의체 운영	56,925
	지역 이공계 대학생 기초 역량 강화 지원	-(목적) 지역 대학 이공계열 학부 저학년의 기초 교과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선도모델(인프라) 육성 -(주요내용) 이공계열 공통·전공기초 교과(이론·실험) 개발·운영, 관련 실험기기·장비, 시설 등 실험실 현대화 지원	3,0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Ⅱ-1)